

제 458 호

1974. 8.2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871 호 :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116 호 :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및 문화재보호구역지정..... 6

제 117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변경및지적승인..... 6

제 118 호 : 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..... 8

제 119 호 : 도시계획통치지구 일부변경및지적승인..... 8

제 120 호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(운동장) 실시계획인가..... 9

제 121 호 : 197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
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..... 9

제 123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10

◎ 공 고

제 164 호 : 원지에정지계획일부변경을위한공람공고..... 11

제 169 호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
지정취소공고..... 12

◎ 사 명..... 1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건축위원회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4년 8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71 호

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 제 44 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제 1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건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건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또는 건축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

2. 법제 12 조 제1항, 법제 26 조 제1항, 법제 46 조 제1항 및 법제 162 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

3. 법제 3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과 지정

4. 법제 33 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제 33 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

5. 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

6. 법제 42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

7. 법제 53 조의 7 및 제 180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

8. 건축물의 진단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시장의 위촉을 받아 법 및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법 및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건축과장, 도시계획과장과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리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두고,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.

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
⑤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.

제7조(전문위원) ①위원회(소위원회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업무에 관하여 상시 조사,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②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③전문위원은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건축1계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회의록 및 보고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제출의 요구등)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소속하의 관계행정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과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.전문위원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준수) 위원회의 위원.전문위원.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 비공개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16 호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및문화
재보호구역 지정

문화재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울

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제 6 조 내지
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및 문화재보호
구역을 지정 고시한다.

1974. 8. 21

서울특별시장

지 정 목 록

종별및지정번호	명 칭	수 량	소 재 지
지방유형문화재 제 21 호	운현궁	건물 324 평 (이로당 79 평 , 노략당 87평 수기당 19 평 , 대채당 21 평 , 별당 96 평 이로당분관 22 평)	종로구운이동 114
지방기념물제 3 호	낙성대 유 지	대지 64 평 (봉천동 218-14 대 44 평) 봉천동 218-19 대 20 평	관악구봉천동 218-14, 19
문화재보호구역	운현궁대지	대 지 2,233.4 평	종로구 운이동 114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1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일부변경및지적승인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
을 다음과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
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
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
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제

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(출장소)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가. 노선조서 : 별첨

나. 도면생략 (도면을 서울특별시청
및 관할구청 (출장소)에 보관함

1974. 8. 23

서울특별시장

노 원 조 사									
구분	종류	유닛	번호	특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	
기정	소로	3		6 m	196 m	우이동 산 59	우이동 100-1	성탄학원포지주 반도로로변경	
변경	"	3		"	436 m	"	우이동 104-7		
기정	"	3		"	426 m	"	"		
변경	"	3		"	186 m	"	우이동 100-1	" "	
기정	"	1		10 m	128 m	상수동 53-2	상수동 24		
변경	"	1		"	128 m	"	"		
기정	"	3		6 m	240 m	갈현동 365	갈현동 323-21	시공부분일부조정 (계설도로)	
변경	"	3		"	276 m	"	"		
기정	"	3		"	230 m	수유동 410-4	수유동 409-3		
변경	"	3		"	230 m	"	"	저적분할선및현 황도로에맞추어	
기정	"	3		"	276 m	수유동 410-19	수유동 406-2		
변경	"	3		"	276 m	"	"		
기정	"	3		"	112 m	수유동 421-16	" 410-202	" "	
변경	"	3		"	112 m	"	"		
기정	"	3		"	150 m	신대방동 541-1	신대방동 556-1	노후복강위치변경	
변경	"	2		8 m	180 m	"	"		
기정	"	3		6 m	150 m	" 556-4	" 542-75	" "	
변경	"	3		"	106 m	" 556-4	"		
기정	"	3		"	150 m	" 556-7	" 552-1		
변경	"	3		"	96 m	" 554-3	"	로선일부축소 공남용저내도시계획 도로제외시폐지	
폐지	"	1		10 m	196 m	일제동 728-1	일제동 736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

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중
건설부고시 제 133 호 (74.5.9)로 시설
결정된 중 1-147 호 노선에 대하여 지
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
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

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
고시한다.

2. 관제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보인다

1974. 8. 23

서울특별시 장

가.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장	기	점	중	점	비고
신설	중로	1	147	20	220	월계동	419-2	월계동	412-2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9 호

도시계획통치지구일부변경 및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228 호 (74.7.20)로
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
계획통치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
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

2. 관제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
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첨부 1. 도면생략

2. 통치지구일부변경 및 지적승인
조서 (도면표시와 같음)

1974. 8. 24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통치지구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	변 경	변 경 후	
특도통치 지 구	성동구자양동 구의동 일부	1,462,000 (갑)	553,595	908,405	변경후면적이지 적승인고시면적임

첨부: 도면생략

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
보관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0 호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(운동장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운동장)
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, 제
25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
고시 제 123 호(73.4.4)의 규정에
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
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
및 사업시행자인 한국마사회에 각각
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
게 보이게 한다.

1974.8.24

서울특별시장

1) 사업시행지: 시내 성동구 성수동
1가 685-150의 2

2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운동
장)시설

명 칭 경마장

3) 사업시행면적: 4,470㎡

4) 사업시행자: 한국마사회 회장
김 동 하

5) 사업기간: 인가후 1주일 이내
- 1974.11.30

6) 인가내 용: 발철인가증 및 도
면표시와 같음.

※별첨:도면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1 호

197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
각 특별회계 제3회 세입, 세출 추가
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4.8.14

서울특별시장

회 계 별	예 산 액
총 계	97,508,752천원
일반회계	61,727,444 "
특별회계	35,781,308 "
주 택 비 특 별 회 계	3,371,303 "
토 지 구 획 정 리 비 특 별 회 계	6,205,088 "
지 하 철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	6,290,181 "

회 계 별	예 산 액
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	513,137천원
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	638,405 "
유도도로비특별회계	613,000 "
시민회관비특별회계	1,038,469 "
재해구호사업비특별회계	85,684 "
운수사업특별회계	1,647,212 "
수도사업특별회계	13,133,754 "
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	2,245,075 "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3호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1. 건설부고시 제 2493(66.6.21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9호(74.2.26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1974. 4. . . . 서울특별시장	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성동구 군자동, 송정동, 면목동 2. 사업의 종류및명칭: 동부간선도로공사(상봉동-화양동간) 3. 사업규모: 1) 도로폭: 기획도로폭 30미터(보도-$5 \times 2 = 10$미터, 차도-20미터) 연 장=5,250미터 2) 교량(면목교)폭원 26미터, 연 장=96미터 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 5. 착수및준공예정일: 1974.4. . . 1974.12.31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(별첨) 7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2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(별첨)
--	---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4 호

환자에 정지 계획 일부
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
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
지에정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
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
제 47 조, 제 55 조 및 제 33 조의
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
간 공람 공고한다.

2. 환지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
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
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
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보이게 한다.

3.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

통보될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
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
공고로 갈음한다.

1974. 8. 23.

서울특별시 장

변 경 계 요

1. 사 업 명 :

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

2. 변경 지역 :

서울특별시 관악구사당동 ⁴⁵⁴ 446 번지
⁴⁸⁴

일대

3. 변경필지수 : 필지

4. 변경조서 및 도면 :

별첨 (생략 : 서울특별시 도시계
획국 구획정리 1 과 및 관할구청
시민봉사실에 비치)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9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
수출품 생산 지정 업체
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
지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,
제 4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 지정
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체를
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4. 8. .

서울특별시 장

1. 지정 업체
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4 수출 액
213	삼성문화인쇄사	조영승	중구충무로 4가 36-45	인쇄물	36,600\$
992	당인주물제작소	최대진	영등포구신도림동 271-32	주물	52,500\$
308	(주)동양트랜스포마	김정후	동대문구중화동 288-22	트랜스	112,000\$
451	두진실업공사	정영진	성동구천호동 454-23	완구	38,000\$
106	수림원	한상수	종로구전지동 49	수예품	223,000\$
453	협신섬유공업사	김명득	성동구성수동 2가 289-27	메리야스의 내의	17,500\$
309	로코다야(주)	노경하	동대문구면목동 1029-1	동물용완구	343,000\$
313	동우섬유공업사	김동길	동대문구면목1동 282-37	액타	

2. 지정 취소업체
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취소사유
537	해의섬유주식회사	최종환	성북구하월곡동 70-4	브리켓트	대기업전환

사	명
---	---

◎ 1974. 8. 20

도 봉 구 지방행정사무관 (지위해제중) 양 회 준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4 항
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◎ 1974. 8. 21

새 경 과 지방행정 강 동 식
주 사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호의
규정에 의하여 (74.8.21-
74.9.23) 휴직을 명함.

도시가스사업소 지방하수
(공무부장직무대리) 기 과 황 병 주
공업과 파견근무를 명함.

하 수 과 지방행정 최 병 은
주 사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호의
규정에 의하여 (74.8.21-74.
9.20 까지) 휴직을 명함.

◎ 1974. 8. 24

박 정 숙
지방약무기관보시보에 임함.
1 호봉을 급함.

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.

권 오 근

지방약무기관보시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최 순 욱

지방간호기관보시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

박 세 영

지방간호기관보시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동부병원 근무를 명함.

안 흥 현

지방간호기관보시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최 경 윤

지방보건기관보시보에 임함. (방사선분야)

1 호봉을 급함.

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영등출장소 지방행정 고 성 환
서 기 보
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해제함.

시 율 록 별 시 장